

# 漁港法개정大役事 基本施設끝낼目標

金 甲 富 <水産廳 施設局長>



어항은 어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어획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어선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원활하게 보급하는 어업경영의 근거지로서 이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어촌지역, 경제, 사회, 문화적 정주생활권을 조성하는 핵심적 기반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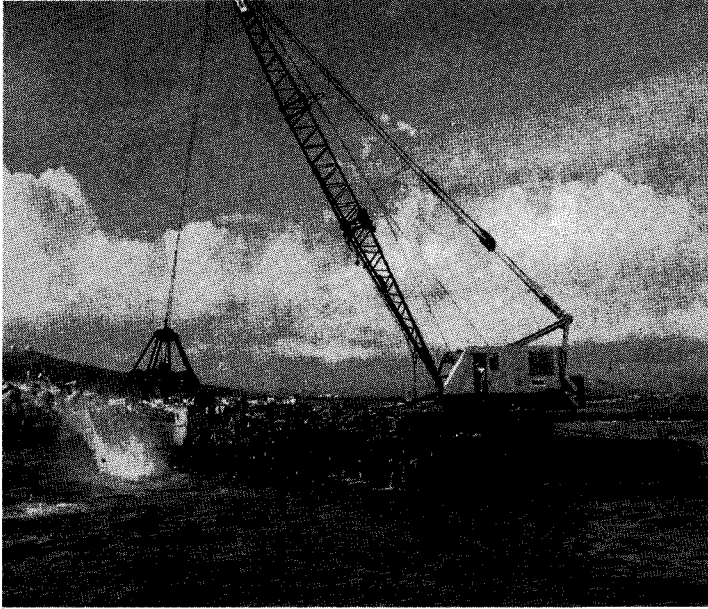
그러나 어항 건설은 정부 수립 이후 그 업무가 여러기관에 분산되어 개발이 매우 저조한 상태로 지속되어 오다가 그 후 점차 사회 구조의 발전과 국민의 욕구가 세분화됨에 따라 수산업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1966년도에 수산정책을 전담하는 수산청이 발족되므로써 그간에 농림부와 건설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어항 건설 업무를 수산청이 전담하여 1970년도에 어항관

계 법령을 제정하고 이법에 따라 다음 해인 '71년도에 어항을 규모와 성격에 따라 1, 2, 3종으로 구분 지정하여 규모가 큰 1종 어항과 긴급대피에 필요한 3종어항의 개발 관리는 수산청이, 규모가 다소적은 2종어항은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어항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한정된 예산으로 완성단계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1988년까지 제1·3종 61개 항에 2,343억원을 투자 28개 항을 완성하고 현재 개발중에 있는 33개 항은 1992년까지 완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89년사업 537억규모

1989년의 어항사업은 수산부



문 예산중에서 단위사업 예산으로는 가장 많은 537억원을 책정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첫째, 투자중인 어항은 완공을 촉진하고, 외곽시설의 우선 시공으로 어항의 이용도를 높이는데 힘썼다.

이에 따라 수산청장 관리항인 61개의 제1·3종 어항 가운데 해역별 거점어항 3개항에 61억원, 일반어항 25개항에 무려 372억 원을 투자해 양포(良浦)항 등 6개항을 완공한 것은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함께 해마다 8~9월에 집중적으로 내습하여 시공중인 어항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태풍에 대비해 태풍진로권에 위치한 어항에 대해서는 태풍철이 오기 전에 주요한 공정을 조기에 완성함으로써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올해 내습한 6차례에 걸친 태풍에도 불구하고 어항공사현장에 별다른 피해가 없이 공사를 마무리 했음이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존시설의 보수보강과 어항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도 진단을 실시하였다.

기존시설이 취약하거나 미진한 어항, 또는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장해야 될 어항에 30억원을 들여 유지 보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어항의 기능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어항시설에 대한 태풍 폭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2개 어항의 기존시설 안전도 진단을 실시해서 걱정만 단면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어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어항개발 확대를 위한

항중 조정작업의 추진이다.

현재 개발 추진하고 있는 61개 1·3종 어항의 기본시설은 91년까지 완성하더라도 어선의 안전수용에는 크게 미흡하므로, 항중조정을 위하여 2종 또는 소규모어항 가운데 주변환경이나 어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항세가 크게 산장되어 개발이 시급한 21개항을 우선 선정해 제1·3종 어항으로 항중을 조정하고자 관계 도지사 의견을 조회중에 있다.

넷째, 제2종 어항의 개발에도 힘을 쏟았다.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제2종 어항 역시 우리 어민이 이용하는 터전이므로 65개항에 74억 원을 투자하여 10개항의 기본시설을 완공했다.

특히 제2종 어항의 기술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 파 추정, 구조물의 안전도 진단, 시설배치계획 및 적정단면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더욱 높게 된 점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다섯째, 효율적인 어항관리를 위하여 어항화보를 제작, 발간하였다.

그동안 어항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올바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대국민 홍보는 물론 어항개발을 널리 인식시키는데 부족 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항개발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완 정리한 어항화보를 발간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고, 대국민 홍보자료로도 활용할수 있게 됐다.

## 어항법개정안도 마련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크고 뜻깊은 사업은 어항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현행 어항법은 1969년 9월19일 제정, 공포되어 무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어항법개정시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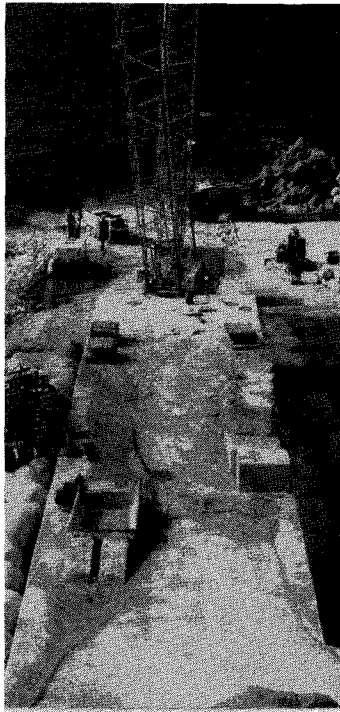
우선 현행 30조 부칙 2항으로 돼있는 어항법을 개정시안에서는 33조 부칙 4항으로 작성했다.

다음으로 어항기능의 다양화에 대비한 각종 시설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항관리시설의 효율화, 어항정화시설 등을 신설해 구체화하였다.

또한 현행 어항법에서는 민자유치에 의한 어항시설이 명시되지 않아 어항개발에 민간참여가 불가능했던 것을 개정시안에서는 민자유치에 의한 어항시설 확대방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투자자와 함께 민자를 유치함으로써 어항개발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어항관리에 있어 벌칙 규정을 강화해 명실공히 어항이 지역발전의 핵심으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항관리 등에 역점을 두었다.

'90년대의 어항사업은 무엇보다 이미 지정되어 개발중인 어항의 기본시설을 완료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1991년까지는 61개 제1·3종어항에 대해서 기본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90년대에는 시·도지사가 개발관리하는 제2종어항을 포함, 총 64개 어항이 되도록 어항을 확대 지정하고 기본시설을 2001년까지 완성시켜 항간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작정이다.

또 민간인도 어항시설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항개발참여를 유도하고, 어항행정의 지방화·민주화에도 기여토록 함으로써 각종 문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국민휴양지로서의 발전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어항 건설에 매진

그러므로 이와 같은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0년대 우리 어항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어선수용능력이 충분히 높아짐에 따라 어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태풍·폭풍을 비롯한 여러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둘째, 어항을 중심으로 복지어촌이 건설되어 어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지역경제발전에 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셋째, 어획물을 신속히 양육, 출하함으로써 선도유지는 물론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 어민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90년대에는 모든 어민과 어항관계자가 마음을 한데 모아 완벽하고 이상적인 어항을 건설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는 것 말고도 복지어촌이 이룩되는 거점이 어항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도 매우 의의가 크다.

여기에서 어민·어항인들의 의식의 선진화가 함께동참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이 시작되는 1990년은 우리 모두 작은 아집을 버리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새출발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